

VOL
43

2026 해외 관세동향

Overseas Customs Trends



CONTENTS



01. 미국

- ❶ 소액면세(De Minimis) 혜택 중단 및 통관 절차 개정 규칙 공포
- ❷ 국제 우편물에 대한 신규 간이 통관 지침 공포
- 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시스템(CAPE) 가동 현황(7.10 기준)
- ❹ 미국 무역사기단속 TF 적발 실적 발표



02. 중국

- ❶ 2026년 6월 중국 수출입 실적
- ❷ 2026년도 법정검사와 수출입상품 표본검사 관련 요점 해설 발표
- ❸ 2026년 6월 중국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현황
- ❹ 해관총서, 제15차 5개년 계획 관련 4대 과제 발표
- ❺ 2025년 중국 정부의 마약 정세 현황 발표



03. 일본

- ❶ 구마모토 지진 피해 관련 세관절차 완화
- ❷ 금 수출 시 통관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 ❸ 무역기반 자금세탁 적발 및 대응 동향



04. EU

- ❶ EU 집행위,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 발표
- ❷ EU 전자상거래 소액물품 임시관세 시행 세부 및 주변 국가 동향
- 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7.6)



05. 베트남

- ❶ 공상부 소관 국가 식품안전검사 대상 수입품목 목록 개정



06. 인도

- ❶ 전자부품·배터리 제조설비 기본관세 면제



07. 태국

- ❶ 원산지증명서·무역서류 온라인 검증포털 운영

해외 관세동향(8월호) 핵심요약



미국

① 소액면세(De Minimis) 혜택 중단 및 통관절차 개정 규칙 공포

800달러 이하 수입품의 소액면세를 중단하고 새로운 통관절차를 도입

② 국제 우편물에 대한 신규 간이 통관 지침 공포

'26.7.24 이후 도착하는 2,500달러 이하 국제우편물에 신규 간이 통관절차와 신고·납부 요건을 적용

③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시스템(CAPE) 가동 현황(7.10 기준)

CAPE 2단계 진행 중, 신고서(Entry) 기준 1,674만건, 1,217.5억 달러 정산 확정

④ 미국 무역사기단속 TF 적발 실적 발표

원산지 허위신고, 품목분류 오류, 저가신고 등 주요 무역사기 적발 사례를 공개



중국

① 2026년 6월 중국 수출입 실적

6월 수출입액은 6,99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6% 증가

② 2026년도 법정검사와 수출입상품 표본검사 관련 요점 해설 발표

표본검사 대상 품목, 검사 절차, 부적합 처리 및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

③ 2026년 6월 중국 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현황

6월 수입식품 통관 불허는 548건이며 이 중 한국산은 6건

④ 해관총서, 제15차 5개년 계획 관련 4대 과제 발표

대외무역 지원, 국경안전, 무역편의, 밀수단속을 중심으로 4대 추진과제를 제시

⑤ 2025년 중국 정부의 마약 정세 현황 발표

마약범죄 사건과 검거 인원은 감소했으나 연간 마약 압수량은 33.5톤으로 증가



일본

① 구마모토 지진 피해 관련 세관절차 완화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세 기한 연장, 구호물자 면세 및 통관절차 완화 조치 시행

② 금 수출 시 통관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26.8월부터 시리얼번호·제련업체·순도·중량 등이 기재된 서류 제출, 현품 대조 검사 실시 가능

③ 무역기반 자금세탁 적발 및 대응 동향

허위 인보이스와 법인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를 계기로 세관·은행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



EU

① EU 집행위,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 발표

한국 전용 쿼터 207.3만 톤과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 147.5만 톤을 배정

② EU 전자상거래 소액물품 임시관세 시행 세부 및 주변 국가 동향

소액물품에 품목당 3유로 임시관세를 부과, 프랑스 자국 소포세 부과 중단, 영국 소액면세 폐지

③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7.6)

CBAM 적용범위 확대 논의와 함께 2026년 2분기 인증서 가격 75.28유로를 공개



베트남

① 공상부 소관 국가 식품안전검사 대상 수입품목 목록 개정

음료·주류, 가공유제품 등 5개 수입식품군의 안전검사 대상과 HS코드를 개정



인도

① 전자부품·배터리 제조설비 기본관세 면제

인도 재무부, 디스플레이·무선충전 모듈용 부품과 리튬이온셀 제조설비의 기본관세 면제('29.3.31까지)



태국

① 원산지증명서·무역서류 온라인 검증포털 운영

태국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와 인증 무역서류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온라인 검증포털 개설

01. 미국

출처 :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① 소액면세(De Minimis) 혜택 중단 및 통관 절차 개정 규칙 공포

■ 배경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혜택을 국제 우편 및 우편 외 모든 경로에 대해 무기한 중단하고 새로운 통관절차를 제정하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2026.6.24. 연방관보에 공포함
- **(사법 판결 및 행정명령 경과)** 미 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E.O. 14324)을 통해 불법 마약 유입 등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면세 혜택을 정지한 이후 2026년 행정명령(E.O. 14388)으로 유예 조치를 지속해 옴. 2026.2.20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기반 추가 관세 부과 권한 부인 판결에 따라 일부 추가 관세는 종료(E.O. 14389)되었으나 소액면세 유예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
- **(CBP 자체 법적 권한 행사)** CBP는 기존 행정명령과 별개로 관세법적 권한(19 U.S.C. 1321)에 의거 하여 본 잠정 조치를 독립적으로 시행하며, 이는 세수를 보호하고 총기류, 위조 상품, 펜타닐 등 불법 마약 수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정 부담 및 관련 법령 제정)** 소액면세 화물이 2015년 1억 3,900만 건에서 2024년 13억 6,000만 건 이상으로 폭증하여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으며,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Public Law 119-21)에 따라 소액면세 혜택은 2027.7.1.부로 영구 종료될 예정

■ 주요 내용

< 국제 우편망 반입 물품 규제 >

- **(면세 혜택 중단)** 국제 우편망을 통한 8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혜택(19 CFR 145.31)은 관보 게재 일 (2026.6.24.)부로 즉시 무기한 중단됨
- **(관세 부과 체계 전면 전환)** 종전 임시 조치하에서는 품목분류 데이터 부재로 10% 임시 추가 관세 (Section 122 Surcharge)만 부과되었으나, 향후 10자리 HTSUS 코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품목별 기본 관세 및 기타 무역 제재 관세(Section 201·232·301)를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관세·세금이 전면 부과됨
- **(신규 우편 간이 통관절차 도입)**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CBP 직원의 수동 서식 작성이 폐지되며, 신고인은 익월 7일까지 14개 필수 데이터(Filer Code, Bond Number, 10자리 HTSUS 코드, 물품 가액, 관세율 등)가 포함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전송하고 Pay.gov를 통해 관세를 납부해야 함 (관보 게재 30일 후인 2026.7.24. 시행)
- **(통관 담보(Bond) 의무화)** 우편 간이통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세수 확보 및 규정 준수를 위해 단일 (Single Transaction Bond) 또는 다회용 통관 담보(Continuous Bond)를 필수 제출해야 함

- **(정식 통관 강제 및 유예기간)** 타 정부 기관(PGA) 요건 물품 및 HTSUS 98·99장 대상 물품 등은 120일 유예기간 동안 우편 간이 절차 이용이 허용되나, 유예 종료 후에는 정식 통관을 거치거나 유예 종료와 동시에 개시되는 전자 우편 통관 시스템인 'Entry Type 13(ET13) 테스트'를 이용해야 함

< 우편 외 전 경로 반입 물품 규제 >

- **(면세 혜택 중단 발효)** 특송화물, 해상, 육로 등을 통한 8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혜택(19 CFR 10.151)은 관보 게재일 즉시 무기한 중단됨
- **(기존 목록 통관 중단)** 적하목록 기반 목록통관(Release from Manifest) 절차가 폐지되며, 기존 'Entry Type 86(ET86) 테스트'도 공식 중단됨
- **(대안 절차)** 해당 물품들은 소액면세 적용 불가에 따라, 더 많은 품목분류 정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Entry Type 11(ET11) 또는 정식 통관 절차를 적용받음

< CBP 추산 관세 수입 증가 및 비용 부담 >

- **(관세 수입 증가)** HTSUS 코드 제출 및 관세 전면 부과로 인해 매년 1억 달러 이상 증가(3% 할인율 적용 시 USD 163,007,696, 7% 할인율 적용 시 USD 166,130,323)가 예상됨
- **(시간 부담 증가)** 국제우편관세지표(IMDW) 전송 서식 변경으로 인해 신고인의 월간 업무 처리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증가하며, 연간 약 17만 USD 비용 예상됨(3% 할인율 적용 시 USD 172,980, 7% 할인율 적용 시 USD 169,794)
- **(행정 비용 증가)** 품목분류 정보 입력이 필수화되며 물품 소유자와 구매자가 아닌 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공인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만 서식을 제출할 수 있음
- **(물동량 일시 중단 및 감소 위험)** 새로운 절차 적용 과정에서 일부 국가의 우편 발송이 일시적으로 중단(Hiatus)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관세 및 행정 비용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Deadweight Loss) 및 전체 수입 물량 감소가 예상됨



② 국제 우편물에 대한 신규 간이 통관 지침 공포

■ 개요

- 미 CBP가 2026.6.24. 게재된 Interim Final Rule에 제시된 신규 우편 간이 통관절차 도입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2026.7.9. 발표함

■ 발효 시기

- 2026.7.24.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우편물에 적용됨

■ 주요 내용

- **(기본방침)** 간이 통관 자격이 있는 모든 우편물은 신규 절차를 적용받으며, 과거 CBP에서 수동으로 처리하던 우편 통관 서류 작성이 전면 중단됨
- **(대상물품)** USD 2,500 이하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정식 통관(Formal Entry) 절차를 거쳐야 함

- 미국 관세율표(HTSUS) 제98장 및 제99장에 해당하는 물품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면제 신청 물품
- 타 정부기관(PGA)의 요건 및 규제 대상 물품
- USD 2,500을 초과하거나, 쿼터 제한 품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물품

- **(신고·납부 주체)** 물품의 실소유자(Owner), 구매자(Purchaser) 또는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미국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 한국의 발송인은 직접 신고를 수행할 수 없음

- **(세부 요구사항)** 통관 데이터, 수입 보증(Bond) 구비, 관세 납부

- 물품이 미국에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필수 데이터가 담긴 스프레드시트를 세관 지정 이메일(CBPDM@cbp.dhs.gov)로 전송
- 수령인은 미국 보증회사를 통해 기본 수입 및 통관 보증을 구매해야 하며, 통관 전에 CBP 전산 시스템(ACE eBon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관세 납부는 데이터 제출과 동일하게 물품 도착 다음 달 7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부 공식 결제 포털(Pay.gov)을 통해 은행 계좌이체(ACH Debit) 필요

※ 기한 내 관세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타 환급금과 상계 처리 및 반출 권한 정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



③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시스템(CAPE) 가동 현황(7.10 기준)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 CAPE 2단계는 조정(Reconciliation) 대상 중 Reconciliation 신고(Entry Type 09) 미제출 건을 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진행 중(6.29)

■ 주요 내용

- 환급 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229,609건으로 이 중 161,792건이 1차 파일검증을 통과
- 신고서(Entries) 기준 통과 건수는 2,440만 건으로 정산 확정 건수는 1,674만 건
- 환급 승인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17.5억 달러이며, 전체 환급 예상액(1,833.6억 달러)의 약 66.4% 수준임

기준 대비 IEEPA 환급 증감표

	6.29 기준	7.10 기준	증감	증감률	(단위)
신고접수 건수(A)	213,939	229,609	+15,670	+7.3%	건
1차 파일검증 통과 건수(B)	149,870	161,792	+11,922	+8.0%	건
접수 대비 파일검증 통과 비율(B/A)	70.1%	70.5%	+0.4%p		
신고서 기준 통과 건수	1,810	2,440	+6.3	+34.8%	만건
정산확정 건수	1,592	1,674	+0.82	+5.15%	만건
정산확정 금액	1,042.9	1,217.5	+174.6	+16.7%	억 달러
재무부 송금액	710.6	863.0	+152.4	+21.5%	억 달러
심사 미통과 건수	436	477	+41	+9.4%	만건
재무부 송부 실패 건수	8,384	9,837	+1,453	+17.3%	건



④ 미국 무역사기단속 TF 적발 실적 발표

■ 무역사기단속 TF 특징

- **(법 집행 패러다임 변화)** 관세 위반을 단순 행정 벌금이나 비용(Cost of doing business)으로 치부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연방법(False Claims Act, FCA)에 기반한 엄격한 민사 집행 및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함
- **(전 공급망 추적)** 단속 범위는 최초 수입업자(IOR)뿐만 아니라 관세사, 하위(Down-chain) 유통업자, 상업적 최종사용자까지 포함하며, 불법 수입품인 줄 알면서 은닉, 매매, 운송을 용인하거나 방조한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함
- **(신설 전담 기구)** 법무부 부패집행국 내에 글로벌 무역·유통 집행 섹션(GTCES)을 신설하여 불법 무역과 세원 탈루,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전담 기소하도록 조치함

■ 주요 무역사기 유형 및 사례

- ① **(원산지 허위 신고 및 환적)** 고율 관세국의 물품을 제3국으로 이동시킨 후, 단순 조립·재포장 등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미달함에도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입
 - 사례 1 : 인도 및 UAE산 금제품을 싱가포르 또는 오만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
 - 사례 2 :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를 완제품 팔레트로 위장해 반덤핑 관세를 회피, 5억 4,950만 달러 회수
- ② **(품목분류 허위 신고)** 반덤핑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관세율이 낮거나 면제되는 유사 품목의 HTS 코드로 기재하여 통관 시도
 - 사례 : 화물 차량(관세 25%)에 임시 가짜 뒷좌석을 부착하여 승용 차량(관세 2.5%)인 것처럼 허위 신고 후 즉시 제거한 수법 적발, 3억 6,500만 달러 민사 배상 합의
- ③ **(저가 가격신고 및 FTA 사기)** 실제 대금 송장과 세관 제출용 저가 가짜 송장을 분리 운영하는 이중 송장(Double Invoicing) 활용 및 FTA 원산지 규정 위반
 - 사례 : 인도네시아 주얼리 제조업체가 요르단을 경유해 미국-요르단 FTA 특혜 관세를 허위 편취한 사건 적발(8,600만 달러 상당)
- ④ **(기타 규제 위반)** 국민 보건·안전 위반 결함 제품 보고 의무 위반
 - 사례 : 뉴저지의 에어컨 수입업체는 결함 미신고하여 형사 벌금 800만 달러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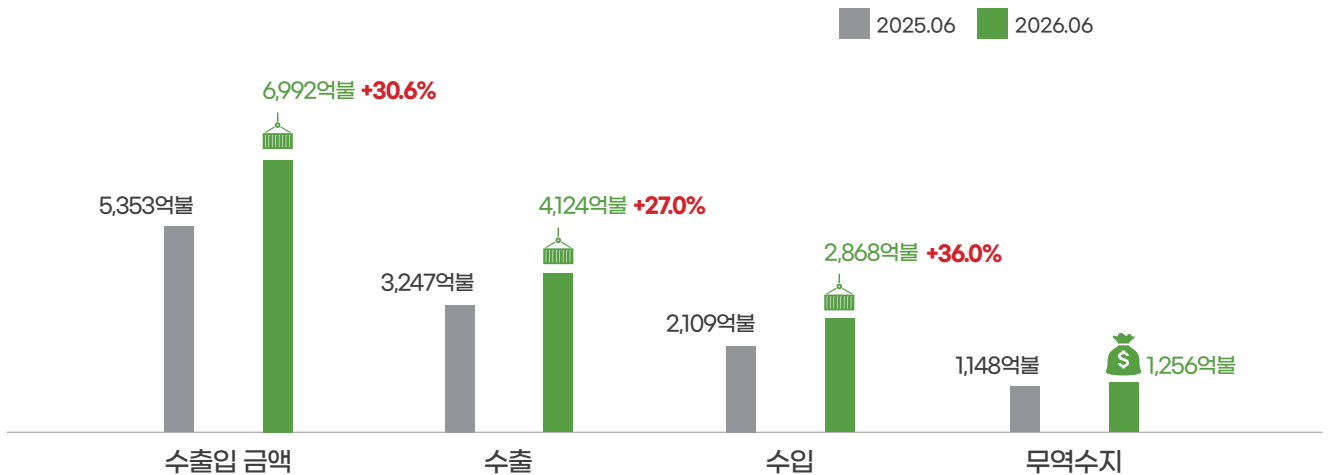
02. 중국

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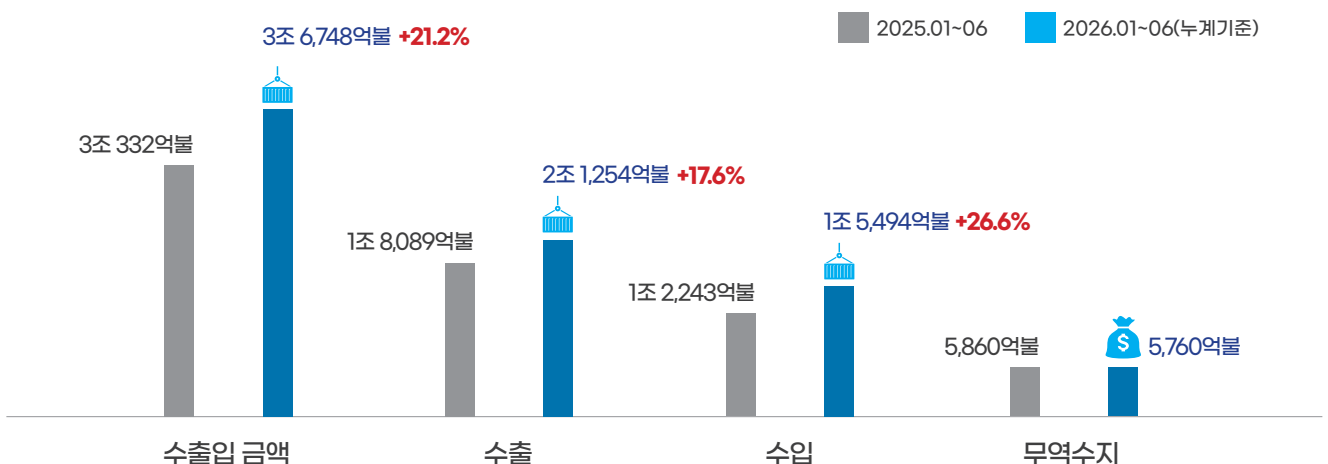
① 2026년 6월 중국 수출입 실적

■ 총괄

- '26.6월 수출입 금액은 6,992억불(전년동기대비 +30.6%), 수출은 4,124억불(전년동기대비 +27.0%), 수입은 2,868억불(전년동기대비 +36.0%), 무역수지는 1,256억불 흑자를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1,148억불)



- '26.1~6월까지 누계기준 수출입금액은 3조 6,748억불(전년동기대비 +21.2%), 수출은 2조 1,254억불(전년동기대비 +17.6%), 수입은 1조 5,494억불(전년동기대비 +26.6%), 무역수지는 5,760억불 흑자를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5,860억불)



※ '25년 기준 수출입금액은 6조 3,548억불(전년동기대비 +3.2%), 수출은 3조 7,719억불(전년동기대비 +5.5%), 수입은 2조 5,829억불(전년동기대비 0.0%)로 무역수지는 11,890억불 흑자를 기록

■ 품목

- **(수출)**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희토류 0.7억불(전년동기대비 +178.8%), 집적회로 382억불(전년동기대비 +121.9%), 미단조 압연 알루미늄 및 소재 30억불(전년동기대비 +77%), 자동차(새시 포함) 182억불(전년동기대비 +72.7%), 자동차자료처리설비 및 그 부분품 271억불(전년동기대비 +53.1%)
 -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비료 6억불(전년동기대비 -54.8%), 도자제품 11억불(전년동기대비 -48.9%), 장난감 34억불(전년동기대비 -6.4%), 램프, 조명장치 및 부분품 36억불(전년동기대비 -4.3%), 신발 장화 41억불(전년동기대비 -1.2%)
- **(수입)** 수입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자동 데이터 처리장치 및 그 부분품 190억불(전년동기대비 +156.7%), 비료 1.5억불(전년동기대비 +116.5%), 집적회로 596억불(전년동기대비 +72.3%), 석탄 및 갈탄 39억불(전년동기대비 +60.7%), 미가공 및 동제품 67억불(전년동기대비 +45.0%)
 - 수입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유류 완제품 14억불(전년동기대비 -26.3%), 자동차 부분품 15억불(전년동기대비 -22.4%), 식용 식물성 기름 7억불(전년동기대비 -17.5%), 자동차(새시 포함) 19억불(전년동기대비 -15.6%), 희토류 1.3억불(전년동기대비 -14.0%)

■ 對한국 수출입 실적

- **(한국)** '26. 6월 수출입금액은 452억불(전년동기대비 +65.9%), 수출은 175억불(전년동기대비 +42.6%), 수입은 277억불(전년동기대비 +85.0%)로 무역수지는 102억불 적자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27억불)
 - '26. 1~6월 수출입금액은 2,313억불(전년동기대비 +47.7%), 수출은 927억불(전년동기대비 +31.0%), 수입은 1,386억불(전년동기대비 +61.5%)로 무역수지는 459억불 적자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149억불)
- ※ '25년 기준 한국과의 수출입 금액은 3,312억불(전년동기대비 +1.2%), 수출은 1,442억불(전년동기대비 -1.1%), 수입은 1,870억불(전년동기대비 +3.1%)로 무역수지는 428억불 적자 기록

② 2026년 법정검사 외 수출입상품 표본검사 관련 요점 해설 발표

<법정검사 및 표본검사>

- **법정검사**: 식품, 농수산물, 화장품, 의약, 의료기기 등 수출입상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상품에 대해 시행하는 검사
- **표본검사**: 법정 검사대상이 아닌 일부 수출입상품에 대해 시행하는 추출 검사

■ 배경

- 해관총서는 2026년도 법정검사와 수출입상품 표본검사실시에 관한 공고(2026-57호)를 발표(5.8)하고 6.1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검사 필요성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요점 해설을 공지

■ 목적 및 근거

- **(목적)**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불량 상품의 생산 및 유통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정비 및 규범화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입 상품의 품질 및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상품 생산·유통 기업이 상품 품질 및 안전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있음
- **(시행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역법』 및 그 시행규칙, 『수출입 상품 표본 검역 관리 방법』 (원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령 제39호로 공포, 해관총서령 제238호, 제263호로 개정)

■ 주요 내용

- **(검사 범위)** 매년 위험 평가를 거쳐 해당 연도의 표본검사 대상 상품 범위를 확정하고 공고를 발표
 - '26.5.8. 발표한 제57호 공고에 따르면, 2026년도 표본검사 대상 상품 범위에는 유아·아동 용품, 식품 접촉 제품, 일용 장신구, 성인용 신발·부츠, 전자제품, 저압 전기기기 등의 수입 상품과 유아·아동 용품, 저압 전기기기 등의 수출 상품이 포함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그 대상은 인체 건강, 재산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 상품, 수출량이 많고 품질이 불안정하며 수출 반품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상품, 소비자 및 관련 사용자가 품질 문제를 제기한 수입 상품, 과거에 중대한 품질 사고가 발생한 상품; 국내외에 새로운 특수 기술 요구사항이 있는 상품 등임
- **(검사 항목)** 무작위로 시료를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해관의 검사 대상 수입 상품에는 해당 강제적 국가 표준(GB 표준)이 있어야 하며, 해관은 이러한 표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검사 항목을 확정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
 - 기업은 “전국 표준 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https://std.samr.gov.cn/)을 통해 관련 상품의 강제성 국가 표준 전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관의 수출 상품에 대한 표본검사 및 검정은 일반적으로 목적지 국가(지역)의 표준 규격 요건에 따라 실시되므로 각 수출입 기업은 사전에 수출입 상품의 기술 지표를 파악하고 품질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결과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상품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명·재산 안전, 건강, 환경 보호 관련 항목에서 부적합한 경우, 해관이 당사자에게 파기를 명령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여 반송 처리됨
 - 그 외 항목에서 부적합한 경우, 해관의 감독하에 기술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에야 판매 또는 사용이 허용됨
 - 표본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출 상품은 해관의 감독하에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 에서 합격한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되며 기술적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적 처리 후 재검사에서도 여전히 부적격인 경우, 수출 불가
 -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입 상품을 판매·사용하거나,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사용 또는 수출 중단 명령, 불법 수익 및 불법 상품 몰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함

- **(기업의 유의사항)** 법정 검사 이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해관의 법 집행 행위이므로, 검사 대상 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업무 조건을 제공해야 함

- 해관이 표본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징수하지 않으며, 검사 후 남은 시료는 검사 대상 기업이 규정된 기간 내에 회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관이 처분함
- 검사 대상 업체가 해관이 내린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출입 상품 재검사 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이 법정 검사 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의 정상적인 수출입 신고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의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③ 2026년 6월 중국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현황

- '26.6월 중 통관이 불허된 수입 식품류는 총 548건이며 주요 국가별로는 에콰도르 105건, 미국 98건, 일본 50건, 러시아 41건, 베트남 35건 등이며, 한국은 6건임
- 사유별로는 동물 의약품 잔류 및 화학물질 기준 초과 236건, 산성아황산나트륨 초과 121건, 라벨 표시사항 위반 79건, 서류와 현품 불일치 68건 등임

한국산 수입식품 통관불허 상세내역(6건)

연번	상품명	중량(Kg)	통관불허사유	반입지 해관
1	무설탕 탄산음료	1,456	안전국가표준 규정 부적합	칭다오
2	무설탕 탄산음료	3,640	안전국가표준 규정 부적합	칭다오
3	식사용 구운김	460	화물과 증빙서류 불일치	상하이
4	식사용 구운김	276	화물과 증빙서류 불일치	상하이
5	불도옹 금라면	10,572	총 세균수 안전국가표준 규정 부적합	심천
6	양념 냉동 문어	3,200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텐진

- 해관당국에서 통관불허되는 건수는 5월 709건을 정점으로 6월에는 548건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우리 기업의 월별 통관불허 건수는 평균 10건 이내임

* (1월) 14/629건 → (2월) 10/452건 → (3월) 11/445건 → (4월) 6/463건 → (5월) 3/706건 → **(6월) 6/548건**



④ 해관총서, 제15차 5개년 계획 관련 4대 과제 발표

■ 개요

- 쑨메이쥔 해관총서장은 금년 상반기 무역량이 16.9%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달성하며 제15차 5개년 계획의 양호한 출발을 알렸다고 평가하며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과 안보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4대 과제를 제시
- 주요 추진 과제는 감독 관리 최적화를 통한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지원, 빈틈없는 국경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보호, 무역 편의성 확대를 통한 대외 개방·협력과 상호 이익 도모, 밀수 단속 강화를 통한 법치 환경 수호 등임

■ 세부 내용

① 감독관리 최적화를 통한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지원

- 법령 개정, 위험 등급별 관리 등 제도 혁신과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율기반 감독·관리를 통한 통관·물류 절차의 효율성 제고
- 2030년까지 항구의 90% 이상에 지능형 장비를 배치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무감 통관(无感通關)' 환경 상용화

② 빈틈없는 국경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보호

- 전통·비전통적 안전(정치·경제·생물·생태·품질·수출통제 등)의 통합 관리로 국경에서의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
- 전 과정 연계, 전 요소 융합, 전 주기 관리를 종합위험관리체계 운영으로 생산·공급망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국경 안전보장 제고

③ 무역편의성 확대를 통한 대외 개방·협력과 상호이익 도모

- 화물과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최적화된 항만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및 종합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 수출입제품 표준, 세관절차, 기업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무역, 녹색무역,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신영역 개척으로 대외무역의 혁신적 발전 촉진

④ 밀수 단속강화를 통한 법치 환경 수호

- 예방·통제, 항만 감독, 밀수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중국 건설을 위해 국문리검(國門利劍) 특별작전 지속 전개
-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력 강화로 마약, 폐기물, CITES 위반물품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국제 합동단속 지속 전개로 글로벌 안보 확립 기여



⑤ 2025년 중국 정부의 마약 정세 현황 발표

■ 총평

- 2025년 중국 정부의 마약단속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속 향상'의 양상으로 지속적 강력 단속으로 마약 범죄 사건과 마약사범 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적 마약 밀수 및 유통 확대 추세와 대형 적발 건의 영향으로 전체 마약 압수량은 증가함
 - 마약범죄 사건 : 2.7만건(전년 대비 27.6% 감소)
 - 범죄혐의자 체포 : 4.1만명(전년 대비 33% 감소)
 - 마약 압수량 : 33.5톤 (전년 대비 25.4% 증가)
 - 기존 흡연(투약)자 수 : 65.8만 명 (전년 대비 11.9% 감소)
- 중국에서 압수된 마약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입(전체 압수량의 61.2%)
 - 연간 총 20.5톤의 해외 마약을 압수(전년 대비 25.8% 증가)하였고, 주요 종류는 메스암페타민류, 헤로인 및 대마류이며, 이 중 해외로 인계되거나 해상에서 차단된 경우 마약은 총 14.3톤(76.5%)이며, 국내 시장으로 유입은 4.4톤
-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독성 물질의 제조·유통·남용 문제는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연간 총 126.5만 리터의 '아산화질소'를 압수하여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아질산염 계열 물질인 '러시(Rush)'와 틸레타민 등 기타 규제되지 않은 중독성 물질 9.3톤을 압수하여 전년 대비 17.6배 증가

■ 주요 내용

- **(마약 남용)** 마약 근절 홍보·교육 실시, 마약사용자 파악·발굴·단속, 등급별·유형별 관리, 금단 치료 및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의 마약 복용자는 65.8만명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
 - 전통 마약 및 마약성·정신 작용성 의약품 남용 인원은 감소한 반면, 규제 대상이 아닌 중독성 물질의 남용은 증가세가 뚜렷하고 저연령화 경향
 - * 필로폰(빙두) 투약자(29.6만 명, 15.1%↓), 아편류(17.8만 명, 25.5%↓), 케타민, 대마 등이 일제히 감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을 남용하다 적발된 인원이 9.2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
- **(마약 출처)** 중국에서 압수된 마약 대부분은 여전히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며, 소량은 국내 제조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음
 - 중국 정부는 해외 원천 차단과 국내 유통 차단을 병행한 결과, 연간 총 20.5톤의 해외 마약을 압수, 이는 전년 대비 25.8% 증가한 수치로 전체 압수량의 61.2%를 차지하며, 주요 종류는 메스암페타민류, 헤로인 및 대마류임
 - 마약 해외 유입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마약 압수량이 대폭 증가하여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총 18.7톤의 마약을 압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7.2% 증가한 수치로, 해외에서 압수된 마약 총량의 91.2%를 차지

- 해외에서 인계되거나 해상에서 차단된 경유 마약은 총 14.3톤으로 76.5%를 차지했으며, 국내 시장으로 유입된 마약은 4.4톤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음. 이 지역의 마약 중 중국-미얀마 국경 육로를 통해 밀반입되어 적발된 양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라오스와 베트남을 경유 적발량은 수배로 증가

- 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마약은 649.6kg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했으며, 압수량은 최근 몇 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일부 코카인은 해안가에서 수거되거나 선박 바닥 밸브실 및 항만 검문 과정에서 발견된 바 있고, 태국만 해역에서 유입된 마약은 1.4톤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함

- **(마약 유통)** 연간 총 2만 건의 밀수·판매·운송 등 3대 마약 사건을 적발하고, 용의자 3만 5천 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 36.3% 감소한 수치임. 압수된 마약은 23.7톤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마약 유통이 차질을 빚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압수량은 육로 경로가 중심이며, 해상 및 항공 경로의 양도 급증하였음. 연간 육로 경로를 통한 마약 밀매 사건을 1만 5천 건 적발하고, 마약 13.2톤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1.8% 감소하고 11.9% 증가한 수치임

- 해상 경로를 통한 마약 밀매 사건 22건을 적발해 마약 9.6톤을 압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7.5% 증가 및 1.8배 증가한 수치이고, 항공 경로를 통한 마약 밀매 사건 83건을 적발해 마약 427.6kg을 압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7.7% 증가 및 22.9배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특정 경유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승객이 마약을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경유한 사건임

- 대량 마약 밀매 단일 사건당 압수량이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연간 1kg 이상의 마약 밀수·밀매 사건 451건을 적발하여 20톤을 압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8%와 29.7% 증가한 수치이며, 사건당 평균 압수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단일 사건 최대 압수량은 5톤에 육박하여 해상 마약 단속 단일 사건 압수량 사상 최고를 경신*

* 동남 해안 지역의 국제 물류 컨테이너 내 마약 은닉 및 해상 마약 밀수 입국·경유 사건, 남서 국경 지역의 대형 트럭 내 마약 은닉 입국 등 대규모 사건이 많았음

- 첨단기술 활용과 비접촉식 범죄가 점차 일상화되고 있으며, 마약 밀매범들은 다크웹을 통한 판매,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모, 가상화폐 결제를 통해 마약 관련 불법 범죄 활동을 더욱 은밀하게 숨기고 있음

- 마약을 은닉하는 수법도 끊임없이 진화하여 위치 추적이 가능한 화물차나 선박 하부에 마약을 숨기거나, 의류에 마약을 용해시키거나, 일상용품 용기에 넣거나, 대형 기계 장비에 봉입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늘어나고 있음

03. 일본

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① 구마모토 지진 피해 관련 세관절차 완화

■ 배경 및 목적

-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2026년 구마모토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수출입 통관, 관세 납부 및 구호물품 반입에 관한 세관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함(2026.7.29.)

■ 주요 내용

- **(대상지역)**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 우토시, 우키시 및 야쓰시로군 히카와정을 재무대신 지정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를 적용할 예정
- **(기한연장)** 지진 발생 당시 지정지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피해자는 2026년 7월 28일 이후 도래하는 관세 관련 신청·청구·신고·서류제출 및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됨 연장 종료일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구호물자)**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물자 수입 시 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함 또한, 해당 절차는 간소화된 신고서식(구호물자 등 수입신고서)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부물품 등에 대해 요구되는 면세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근거법령) 「관세정률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
- **(구호물자 외)** 구호물자 외에도, 지진으로 인해 통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화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신고세관)** 지진으로 인해 원래 신고해야 하는 세관에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 후 다른 세관에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
 - **(손상화물)** 지진으로 인해 수입 화물이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손상 정도에 따라 관세 소비세 감면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손상 관련 명세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기타조치)** 관세관련 신청 등의 기한 연장, 원산지증명서 제출 유예, 보세구역 외 장소 보관 신청 절차 간소화, 보세운송 승인 절차 완화, 분실 화물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절차 완화도 시행 중임

② 금 수출 시 통관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 배경 및 목적

- 최근 일본의 금 수입량 및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금 수출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의 밀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무성 관세국은 금의 유통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 4월부터 금의 품목분류 세분화 및 수입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금의 수입 및 유통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2026. 8월부터 관세국은 금 수출 시 심사 및 검사를 강화하고자 통관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수출업체 및 통관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함

■ 주요 내용

- 2026.8.1.부터 시리얼 번호(제조번호), 제련업체를 나타내는 마크, 순도 및 중량 등이 각인된 금을 수출하는 경우 시리얼 번호 및 기타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통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며, 이와 관련 해당 서류와 실제 물품을 대조하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수출업체)** 통관업체에 수출 화물이 시리얼 번호 등이 있는 금인지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수출 화물이 시리얼 번호 등이 있는 금인 경우에는 시리얼 번호 등이 기재된 통관 관련 서류(매입명세서, 패킹리스트 등)를 작성하여야 함
- **(통관업체)** 수출업체에 수출 화물이 시리얼 번호 등이 있는 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 통계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출 화물이 시리얼 번호 등이 있는 금인 경우에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시리얼 번호 등이 기재된 통관 관련 서류(매입명세서, 패킹리스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NACCS로 수출 신고할 때에는 「수출승인증 등 식별」란에 「GOLD」를, 「수출승인증 번호 등」란에 「SHORUI」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출 신고가 간이심사로 처리된 경우 수출 허가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③ 무역기반 자금세탁 적발 및 대응 동향

- 경시청은 7.2(목), 자금세탁의 지시 역할로 보이는 중국 국적의 회사 대표인 임군(林軍, 44세) 등 5명을 조직범죄처벌법 위반(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함
- 용의자 임군 등은 2023. 9월, 범죄 수익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정밀기기의 수출 대금으로 위장하여 약 19만 4천 달러를 일본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은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경시청은 용의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음
 - 동 그룹은 미국에 거주하는 SNS형 투자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을 미국에서 송금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당일 중에 두 곳의 우체국 창구에서 인출역이 출금한 의혹이 있음

- 용의자들은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했으며, 은행의 전화 문의에 정당한 무역 사업 수입이라고 설명했다고 함
- 이번 사건은 수상한 거래로 판단한 은행이 경시청에 연락하여 발각되었음
- 경시청은 용의자들이 2023년 이후 적어도 약 2억 엔을 부정하게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특수 사기 사건과의 관계성도 조사할 예정임
- 국제 송금 서비스나 가상화폐의 악용을 비롯하여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 대책은 국제 사회의 큰 과제로, 거래 정보를 집약 분석하는 해외의 자금정보기관(FIU)과 일본 측의 교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음
- 수출입으로 위장하는 수법은 ‘무역 기반 자금세탁(TBML, Trade-Based Money Laundering)’이라고 하며, 귀금속이나 전자기기 식품 등 가상의 거래나 과도한 대금 신고를 통해 범죄 수익을 이전 시킴
- 2000년대 이후 각국 당국이 주목하게 되었지만, 방대한 거래 중에서 부정 사건을 찾아내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가격이 부자연스러운지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음
- 자금 조달 대책을 심사하는 국제 조직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0년 보고서에서 ‘TBML은 전문 자금세탁 조직이 가장 선호하는 수법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무역 거래 감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2025.12월, 재무성 관세국은 3대 은행(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과 각서를 체결하였음
- 무역 자금세탁 대책을 위해 정보교환을 진행하여 인보이스를 확인하는 세관도 포함해 부정행위를 감지하려는 목적이 있음
- 무역 업무의 전자화 서비스를 전개하는 트레이드왈츠는 2025.10월, 3대 은행 및 NTT데이터와 함께 무역 자금세탁 대책에 관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은행 간의 노하우와 관민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음

04. EU(유럽연합)

출처 :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① EU 집행위,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 발표

※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국(아세안 ▶ EU ▶ 미국 順)

- EU 집행위는 6.30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정한 이행규정(Implementing Act)을 EU 관보에 게재

※ 입법 경과 : '25.10.7 EU집행위 법안 제안 → '25.12.12 EU이사회 협상 입장 채택 → '26.1.27 유럽의회 입장 채택 → '26.4.13 삼자협의 타결 → '26.5.19 유럽의회 승인 → '26.6.8 EU 이사회 승인 → '26.6.24 관보 게재('26.7.1부터 시행)

- EU는 새로운 쿼터 체계 구조에서 최근 3년('22~'24년) 평균 수입물량 기준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쿼터는 ① WTO 국가쿼터, ② FTA 국가쿼터, ③ FTA 공용쿼터*로 구분

*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국가 중 EU의 FTA 체결국이 경쟁을 통해 사용

-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품목의 경우 쿼터는 ① FTA 국가쿼터, ② WTO 공용쿼터, ③ FTA 공용쿼터로 구분

- 한국 전용 쿼터는 총 207.3만 톤으로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25.7~'26.6월)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며,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총 147.5만 톤임

※ EU 신철강 조치 하 총 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감소

-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 대해 한국 전용 국가쿼터(WTO 국가쿼터 및 FTA 국가쿼터) 205.7만 톤과 FTA 공용쿼터 90.8만 톤 배정
-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 한국 전용 국가쿼터(FTA 국가쿼터) **1.6만 톤**과 **공용쿼터**(WTO 공용쿼터 및 FTA 공용쿼터) **56.7만 톤**배정

- 금번 국가별 쿼터 이행 규정은 '26.7.1. 규정 시행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 절차를 통해 추진된바,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



② EU 전자상거래 소액물품 임시관세 시행 세부 및 주변 국가 동향

1. EU 전자상거래 소액물품 임시관세 시행

- **(개요)** 이번 조치는 부가세와 별개인 임시 정액관세(Temporary fix duty) 부과로서,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이미 2021년에 폐지되어 지금도 모든 전자상거래 수입 건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 중임
 - 다만,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비상업적 선물은 45유로까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

* EU 집행위는 “3유로 관세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특정 사업모델에 사실상 경쟁우위를 주던 낮은 관세면제를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발표
- **(법적근거)**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채택된 EU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EU)) 2026/382이며, 2028.7.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 이 규칙은 종전 소액면세의 근거가 되던 관세면제규칙(1186/2009) 제5장을 삭제하고 그 자리를 3유로 임시관세로 대체하는 방식
- **(부과 단위)** 3유로의 임시관세는 소포 개수가 아니라, 품목분류에 기반한 ‘품목(item)’마다 부과되므로 한 소포에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이 여러 개 들어 있으면 해당 종류만큼의 관세가 부과됨
 - * EU 집행위 보도자료(‘26.6.29.) 예시에 따르면, 같은 티셔츠 5장이 든 소포는 한 품목이므로 3유로, 티셔츠 3장과 손목시계 1개가 함께 든 소포는 두 품목이므로 6유로 부과
- **(납세 의무)** 통관 신고 셀러(플랫폼) 또는 수입 신고자가 납세 의무를 지며, 수입 원스톱 신고제도 (IOSS*) 이용자, 우편 및 특송 사업자, 간접대리인 등이 됨
 - * (Import One-Stop Shop) 역외 판매자가 소액물품을 EU 소비자에게 팔 때, 회원국마다 따로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단일 창구에서 판매 시점에 부가세를 걷어 한 번에 신고와 납부할 수 있게 만든 간소화 시스템
 - EU 내 사업장이 없는 역외 사업자는, EU 내 간접대리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화물을 EU로 수입 가능
 - ※ 이번 개혁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원격 판매 수입자’(The importer for distance sales)로서, 물품 공급자 또는 그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모든 수입자 책임 부과
- **(FTA 활용)** EU 집행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무역협정(한-EU FTA 등) 혜택을 받는 물품은 임시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IOSS를 이용하지 않고 표준신고서식(H1)를 통해 신고해야 협정 특혜세율을 지속 적용받을 수 있음

2. 프랑스 소포세(Small Parcel Tax) 부과 중단

- 프랑스는 2026.3.1. 자체적으로 소포세를 도입했는데, 비EU국가에서 오는 150유로 이하 물품을 간이통관할 때 품목당 2유로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음
 - * 프랑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는 관세, 부가세와는 별도로 부과

- EU 집행위 브리핑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포세 시행 후 프랑스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소형 화물이 급감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인접국으로 우회 경유한 것에 기인함
- 프랑스 정부도 6.30 발표를 통해 EU 차원의 새로운 정액관세와 별도로 자국 소포세만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국 소포세 부과를 중단(suspension)하기로 함.
※ EU는 '26. 11월경부터 전자상거래 소형화물에 임시정액관세와 별도의 '취급수수료(Handling Fee)' 부과 예정으로, 이는 세관의 처리·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3. 영국 소액면세 폐지 발표

- 영국은 현재 가액 135파운드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EU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는 이미 2021년부터 부과되고 있어 해외 판매자가 판매 시점에 걸어 영국 관세청(HMRC)에 납부하고 있음
 - 동 체계에서 영국업체는 물품을 수입하며 관세를 내는 반면, 해외 온라인 셀러는 소비자에게 개별 소포로 직접 보내며 관세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 지난 6월 23일 영국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액면세 폐지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2028. 10월로 조정한다고 공식 발표
 - 재무차관은 이를 통한 추가 세수를 식당, 호텔 등 사업체에 대한 세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



③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7.6)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CBAM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상입장안 채택(7.6)

- 유럽의회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ENVI)는 '25.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CBAM 적용을 하류재(Downstream Product)로 확대하는 CBAM 규정 개정안과 △한시적 탈탄소화 기금 규정안에 대한 협상입장 초안을 7.6 채택
 - **(CBAM 규정 개정안)** EU 이사회는 이미 입장을 채택(6.12)한바, 유럽의회가 9.14 예정된 본회의에서 협상 입장을 최종 채택하면 3자 협상에 착수 예정이고, 연내 합의 도출이 목표
* 3자(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 합의 도출 시, 세부 문안 조정을 거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가 각각 합의에 따른 최종 문안을 승인하고, 관보 게재 3일 후 발효 예정
 - **(한시적 탈탄소화 기금 규정안)** EU 이사회 입장이 11.9 예정된 경제재정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
- CBAM 개정안 관련 유럽의회 환경위(ENVI) 수정안 주요 내용
 - **(범위 확대)** 집행위가 CBAM 범위를 하류재로 확대하기 위해 180개 CN코드를 제안한 것에 대해 277개 CN코드를 추가*로 제시
* 가정·주방용품, 위생용품, 냉동 및 난방 설비, 펌프, 크레인, 지게차, 산업용 기계, 차량 부품, 트레일러, 의료 및 분석 장비, 금속 가구 부품, 모듈형 건축물, 이동식 주택, 조립식 건축물 등

- **(최소 질량 기준)** 집행위가 매년 4.30까지 CN 코드별로 수입 자료 및 내재배출량을 검토해, 기존 질량 기준이 CBAM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탄소누출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 입법안을 제출
- **(우회 방지)** 우회행위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회 행위 패턴 발견 시 집행위가 실제 원산국의 기본 값을 적용하는 권한 부여
- **(일시 면제)** 가격 급등 등 상황에서 집행위가 일시적으로 해당 상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7a조)을 삭제하고, 대신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CBAM 수입을 영향받는 산업에 한시적으로 재배분하는 메커니즘 추가
- **(스크랩 품목)** 알루미늄과 철강을 구분해, 소비 전 알루미늄 스크랩은 대상 상품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배출량을 내재배출량 산정 시 반영하고, 소비 전 철강 스크랩은 보고 의무는 부여하나 배출량 계산에는 미반영*
- * EU 집행위가 전구체로 사용되는 소비 전 철강 스크랩의 배출량을 반영하는 경우 CBAM의 효과, 스크랩 공급, 재활용 관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최빈개도국에 대한 간소화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하고, CBAM 의무 이행에 국제크레딧 활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

● 한시적 탈탄소화 기금 설립 규정안 관련 환경위 수정안 주요 내용

- 한시적 탈탄소화 기금 설립에 찬성하나 재정 지원 기간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로 하고, CBAM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
- 특히, 식량 안보에 중요한 비료 생산자 및 하류재 사용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요소,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
- 남은 수입은 회원국에 반환 대신 파리협정에 따른 EU 기후재원 공약 이행에 활용

■ EU 집행위, 2026년 2분기 CBAM 인증서 가격 공개

- EU 집행위는 7.6 2026년 2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을 공개한바, 가격은 75.28유로이며, 분기별 가격은 해당 분기 동안 EU에 수입된 CBAM 대상 상품에 대한 인증서 판매에 적용되고 실제 구매는 2027.2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임

05. 베트남

출처 :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① 공상부 소관 국가 식품안전검사 대상 수입품목 목록 개정

■ 개요

- 베트남 공상부는 국가 식품안전검사 대상 수입품목과 HS코드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28/2026/TT-BCT호」를 공포함(2026.6.1. 공포, 2026.7.17. 시행)

■ 검사 대상 품목군

- 적용 대상은 공상부 소관 수입식품(대량생산 유통되는 가공식품, 음료 등)으로 이번 시행규칙의 부속서에는 다음 5개 품목군과 세부 HS코드를 수록

구분	대상 품목군	주요품목
1	음료·주류	과일·채소 주스, 생수·탄산수, 청량음료, 비알코올 맥주, 맥주, 와인, 증류주, 식용 알코올
2	가공유제품	가공우유·크림, 농축유, 발효유, 버터, 치즈, 유제품 조제품, 아이스크림
3	식물성 유지	대두유, 땅콩유, 올리브유, 팜유, 해바라기유, 코코넛유, 마가린, 쇼트닝 등
4	밀가루·전분제품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맥아, 각종 전분, 글루텐, 파스타·면류 등
5	빵·잼·과자류	사탕, 초콜릿, 빵, 케이크, 비스킷, 웨이퍼, 잼·젤리, 당절임·가공 과실류

■ 주요 내용

- (HS코드 정비)** 검사 대상품목의 HS코드를 베트남의 최신 수출입품목표인 AHTN 2022에 맞춰 정비하고, 코드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 HS 4단위만 기재된 경우 : 해당 호에 속하는 모든 HS 8단위 품목에 적용

* HS 6단위까지 기재된 경우 : 해당 소호에 속하는 모든 HS 8단위 품목에 적용

* HS 8단위까지 기재된 경우 : 명시된 HS 8단위 품목에만 적용

- (품목분류)** 품목 설명과 HS코드가 일치하지 않거나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베트남 관세법령에 따른 품목분류 결과를 우선 적용

■ 우리기업 유의사항

- 베트남으로 음료, 주류, 가공유제품, 식용유, 면류 및 과자류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기존 HS코드를 신규 목록과 대조하고, 제품의 성분과 가공상태에 따른 소관 부처 확인 필요
- 품목별 검사기준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적용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구성원료의 베트남 식품안전기준 적합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예. 라면: 면, 스프, 부재료)

06. 인도

출처 :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① 인도, 전자부품·배터리 제조설비 기본관세 면제

■ 개요

- 인도 재무부는 2026년 7월 8일 전자배터리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25·26·27 / 2026 - Customs호 등 3건의 관세감면 고시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감면내용)** 디스플레이 조립품, 휴대전화 무선충전 모듈 제조용 부품과 리튬이온셀 제조용 설비에 대한 기본관세(BCD)를 면제

고시	대상 품목	적용 범위·비고
Notification No. 25/2026-Customs	셀(Cell), FPCA, 백라이트 유닛, 프레임, ACF 등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제조용 부품 5종	자동차·의료·산업용으로 한정. 휴대전화·스마트워치용 디스플레이, 스마트미터용 LCD·백라이트, LCD·LED TV 패널 및 IFPD 모듈 제외
Notification No. 26/2026-Customs	NC 어셈블리, E-실드, PET 라이너, PC 심, 메인 연선·NFC 코일, NdFeB 자석 등 부품 6개 항목	휴대전화 무선충전을 위한 인덕터 코일 모듈 제조용. 고시 상 기술적 정의와 용도조건 충족 필요
Notification No. 27/2026-Customs	분말건조기, 혼합·공급시스템, 코팅·압착· 권취·용접·검사장비 등 리튬이온셀 제조용 자본재 85개 항목	기존 용도별 항목을 '리튬이온셀 제조용'으로 통합. 대상 설비와 HS코드를 재정비·확대

※ 리튬이온셀 제조설비는 휴대전화 전기차 등 종전 최종사용처 용도 제한을 없애고 면제체계를 통합·확대

- **(적용기간)** 이번 관세 면제는 고시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시사점)** 이번 조치는 전자부품과 배터리의 생산비용을 낮춰 인도 내 제조 및 투자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부품·설비를 인도에 공급하는 우리 수출기업은 대상 HS코드와 최종용도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07. 태국

출처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① 원산지증명서·무역서류 온라인 검증포털 운영

■ 개요

- 태국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는 원산지증명서와 인증 무역서류의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검증포털을 개설(2026.7.22.)

■ 주요내용

- **(운영목적)**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시간을 단축하고, 태국산 제품과 상공회의소 인증 무역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임
- **(검증대상)** 태국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부착된 상공회의소 인증 스티커(Legalized Document)
- **(이용방법)** 태국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thaichamber.org)의 'CO & Legalization 검증' 메뉴 또는 전용 검증포털(co.thaichamber.org/#/validation)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인증 정보 입력 조회